

1. 개정이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 및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표지의 종류와 규격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벌점제도 중 단수(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2021. 12. 31. 시행), 초과속 위반자(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 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별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 다.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표지 항목 신설(안 별표6)
- 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별점 규정 정비(안 별표28)
- 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별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4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 32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321 의2	보행자 우선도 로 표지		•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부근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45	보행자 전용도 로 표시		•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 시점·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4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45의2	보행자 우선도 로 표시		·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 시점·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별표 28 제1호라목(3) 중 “10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으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8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함)	제25조의2제1항	30

별표 28 제3호가목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27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50조의2제1항	10

별표 28 제3호가목(주) 4호 본문 중 “운전자에 대해서는”을 “운전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120점의 별점을 부

과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주)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 3150 - 0659